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72
----------	------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 김 상 희 의원

1. 제정이유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사업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안 제4조)
- 자연재해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4. 10. 7. ~ 10. 9.

(2) 규제심사:

(3) 비용추계서:

(4) 부패영향평가 결과:

(5) 성별영향평가 결과:

(6)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광진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3항)
3.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
4.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나는 경우를 말한다.
5.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나는 경우를 말한다.

6. “도시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7. “자연재난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재난안전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
 - 나. 「서울시 광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 다. 자연재난 노출빈도가 높은 야외노동자
 -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자연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발생한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적용한다.

제5조(자연재해 예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각 호의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자연재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운영
4.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의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풍수해

- 가. 풍수해 저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
- 나. 과거 침수피해 지역(가구) 및 취약계층을 위한 풍수해 예방 사업
- 다. 침수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
- 라. 그 밖에 풍수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폭설

- 가.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 확충
- 나. 폭설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폭설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폭염

- 가.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
- 나. 그늘막, 스마트쉼터, 무더위쉼터, 쿨링로드,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을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 및 운영
- 다. 폭염으로 탈수·탈진 등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생수 지원 및 장

비 투입

라. 그 밖에 폭염 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한파

가.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

나. 스마트 휴 쉼터, 정류장 방풍막, 온열의자 등 한파를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 및 운영

다.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라. 그 밖에 한랭피해 및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진, 가뭄, 낙뢰 등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난

제7조(홍보 등) 구청장은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홍보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2. 전광판 등을 활용한 자연재난 정보 신속 전파
3. 제7조의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등과 재난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 강리안(02-450-5390)

붙임1

관계법령

법규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규명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